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9. 10(화) 14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게
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71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를 가진 의원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(안 제5조 및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 및 제9조
 - 2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 및 제9조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거,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 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 및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마련에 대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,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, 의정활동 보조기구 제공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 - 안 제7조에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- 금번 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 보조인력 · 보조기구 ·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, 2024년 8월 기준 전국 39개(서울 7개 포함)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중이며,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여짐.

- 우리구 의회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- 붙임 1.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현황 1부
- 2.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현황

-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운영 : 7개

〈2024년 8월 기준〉

| 연번 | 지자체 | 조례명 | 제정일자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1 | 서울시 |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13.03.28. | |
| 2 | 강북구 |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| 2013.05.10. | |
| 3 | 성북구 |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15.09.30. | |
| 4 | 강남구 |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22.07.01. | |
| 5 | 성동구 |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22.09.22. | |
| 6 | 영등포구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23.09.14. | |
| 7 | 중랑구 |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| 2024.01.04. | |

관계 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[시행 2024. 8. 14.] [법률 제20290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8조(차별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·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